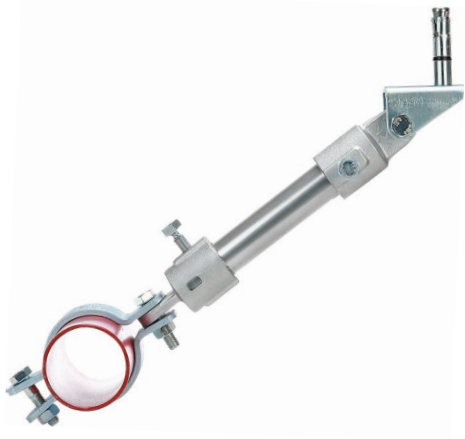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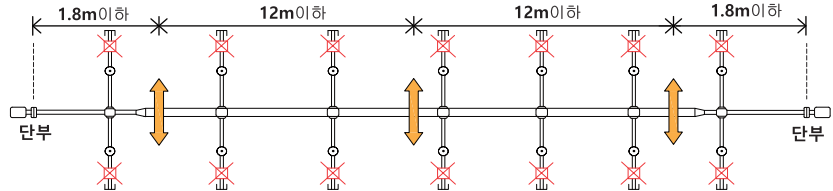


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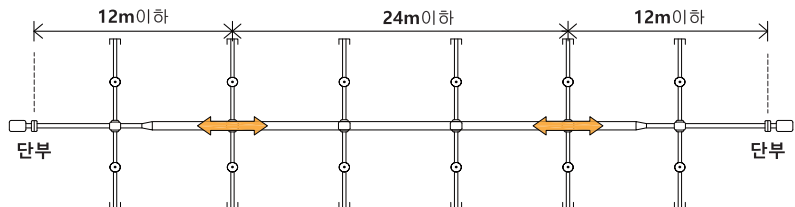
- 횡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모든 주배관, 교차배관에 설치하여야 하며, 가지배관 및 기타배관은 배관구경 65mm 이상인 배관에 설치한다.
-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 이격거리는 1.8m 이하로 설치한다.
- 버팀대 간격은 중심선 기준 최대 12m 이하로 설치한다.



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



- 종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는 배관 구경에 상관없이 주배관, 교차배관에 설치한다.
- 마지막 버팀대와 배관 단부 사이 이격거리는 12m 이하로 설치한다.
- 버팀대 간격은 중심선 기준 최대 24m 이하로 설치한다.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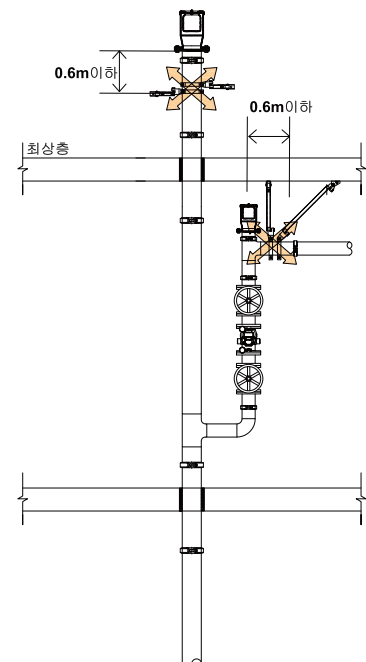
4방향 흔들림 방지 버팀대



(수직배관설치형)



(수평배관설치형)



- 길이 1m를 초과하는 주배관(입상관)의 최상부에는 4방향 흔들림방지 버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.
- 입상관 최상부의 4방향 버팀대가 수평배관에 부착된 경우, 입상관 중심선으로부터 0.6m 이내여야 하며 하중은 수직 및 수평방향의 배관을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.